

# 한국체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12. 9. 20 . 규정 제6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이하“본교”이라 한다)의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상의 안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실험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대학원, 부속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종사하는 교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습실”이라 함은 교수, 조교,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 실습실, 연구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2.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 함은 대학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실험실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정”, “부” 안전관리담당자를 말한다.
5. “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종사하는 교수, 조교, 학부(과) 및 대학원생, 소속연구원 등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체육과학연구소장은 실험실습실에 관하여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2. 실험실습실 중 대학원장,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소관 실습실을 제외한 실험실습실 관리 운영

② 체육과학연구소를 제외한 실험실습실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원장 : 대학원 소관 실험실습실의 학생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2. 교학처장 : 교학처 소관 실험실습실의 학생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3. 훈련처장 : 훈련처 소관 훈련장의 전문실기 학생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제5조(안전관리 총괄책임자)**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대학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각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실험실습실 별 정·부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실과 그 사용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지침의 게시)**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습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실험실습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습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주기적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5. 사고발생 시 긴급 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활동조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관리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① 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

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습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⑥ 활동종사자는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의무)** 활동종사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습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험실습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실험실습실 안전수칙)**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실험실습실의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실험실습실 안전수칙을 각 해당 실험실습실에 부착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실별로 비상 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는 정·부 안전관리담당자, 활동종사자, 인근 소방서 및 병원 응급실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활동종사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 즉시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1차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보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표 5의 안전관리 체계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사고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이규정을 위반한 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체육과학연구소장,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훈련처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체육과학연구소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2. 9. 20. 제60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제6조제2항 관련)

기 관	안전관리책임자	정 안전관리담당자	부 안전관리담당자 및 활동종사자
학부	교학처장	학과장	실담당 교수, 조교, 대학원생
대학원	대학원장	주임교수	실(센터)담당 교수 및 조교,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단 장	각 사업단 책임자	조교, 종사자
체육과학연구소	체육과학연구소장	실담당 교수	조교, 종사자

<별표 2>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시간(제8조제5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 기관
자체 교육	활동종사자	수 시	자체
정기 교육	활동종사자	8시간/년	위탁 교육
신규 교육	신규 채용 활동종사자(계약직 포함)	종사 전 8시간 이상	위탁 교육
	신규로 연구 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채용되지 않은 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 원생 등)	종사 전 2시간 이상	위탁 교육

〈별표 3〉

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제8조제6항 관련)

검진	건강검진 대상	주기
학교 보건법에 따른 정기검진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활동종사자	1회 /년
신규채용 등에 따른 건강검진	신규 채용 활동종사자(계약직 포함)	1회 /채용시
	신규로 연구 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채용되지 않은 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 등)	1회 /연구개발 활동 참여시

〈별표 4〉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10조제2항 관련)

종 류	실시 시기
일상점검	매일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 1회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체계도(제13조 관련)

